

성남 도시관리계획(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성남 도시관리계획(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. 10. 20.

성 남 시 장

□ 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사항만 기재)

○ 제2장 공동주택용지

제7조(담장에 관한 사항)

구분	계획내용
제7조 (기정)	①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담장의 높이는 1.2m이하로 하며 담장의 재료는 생울타리로 한다. ② 녹지축 및 공원 등의 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다. (이하 생략)
제7조 (변경)	① 담장의 설치는 지양하되, 부득이 설치할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. ② 녹지축 및 공원 등의 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등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다. (이하 생략)

□ 관련 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5-30호

고 시 문

1. 하천법 제3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5년 10월 15일

성남시 분당구청장

하천의 명칭	탄 천		
점용자의 성명	성남시장 (체육진흥과)	점용자의 주소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
점 용 위 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55번지 일원		
점 용 면 적	4,945㎡		
점 용 목 적	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운영	점 용 개 요	-
점 용 기 간	2025. 10. 15. ~ 2026. 3. 31.	기 타 사 항	-

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5-31호

고 시 문

1. 하천법 제3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5년 10월 17일

성남시 분당구청장

하천의 명칭	탄 천		
점용자의 성명	분당노인종합복지관	점용자의 주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50(정자동)
점 용 위 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0-1번지		
점 용 면 적	2,500㎡		
점 용 목 적	분당세대공감축제 걷기행사	점 용 개 요	-
점 용 기 간	2025. 10. 24. ~ 2025. 10. 25. (2일)	기 타 사 항	-